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와 무역협회의 「주간 통상정보」를 발  
췌한 것이며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1. 美,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 관한 수출통제 완화안 발표

상무성이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월 24일 통신기기 및 컴퓨터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안을 발표하였다. COCOM의 수출통제품목은 크게 8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미국은 이미 10월 1일 해양기술, 항공장비 등 6개 분야에 관한 수출통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에 제출하였으나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2개그룹에 대해서는 행정부처간의 이견으로 국가안보 위원회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기로 결정, Core List의 제출을 연기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8개 핵심그룹에 대한 Core List를 모두 제출한 셈이며,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그룹3·통신〉

통신부문에서는 ISDN을 갖추지 않은 디지털 교환기기 시스템과 공동채널 신호기(Common Channel signalling) 일부 TV 및 위성통신용 무선송신기(23.6기가헤르쯔까지) 및 위성통신지구국(31기가헤르쯔까지), 항공통신기, 케이블 제조설비, 민간사용이 가능한 모든 중소형 패킷 전환기기 등의 수출통제 해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광섬유제품 및 기술 등 몇몇 분야의 통제는 계속한다.

### 〈핵심그룹7·컴퓨터〉

컴퓨터에 대해서는 현행 수출통제대상 공산

품목록(Industrial List)에 비해 우선 문맥부터가 수출지향적으로 변경된 점이 두드러진다.

—자료처리속도(PDR)가 초당 60메가비트 이하인 컴퓨터와 EMR(Equivalent Multiplier Rate)가 7MOPS 이하인 컴퓨터의 수출통제 해제  
—자료처리속도가 초당 600메가비트 내지 1,000메가비트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EMR가 10MOPS를 넘지 않는 한 각국별 재량에 의해 수출관리절차를 운용

—모든 미니컴퓨터 및 수퍼 미니컴퓨터의 수출에 대해 각국별 재량적 수출관리절차 적용

—대부분의 美國産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수출은 일반수출허가(GL)만으로 수출 허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는 현행 통제수준의 다섯배인 800메가바이트 수준까지 수출통제를 해제하고, 변경입력불능 디스크드라이브(Write Once Read Many)의 수출통제도 해제

—소규모 전산시스템용 Single board 중앙처리장치(CPU)의 수출통제해제

—대부분의 범용 소프트웨어의 수출통제해제  
한편 미정부 및 업계 대표들은 컴퓨터의 성능측정 기준을 현행 자료처리속도(Processing Data Rate)뿐만 아니라 PDR, EMR, 신호처리능력(Signal Processing Capability), 다중자료처리능력(Multi-data-stream Processing Capability)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같은 개선이 이뤄질 경우, 컴퓨터수출통제기준이 훨씬 단순해지고, 다양한 컴퓨터의 성능측정이 보다 합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2. 상·하원, 수출관리법 연장법안에 잠정합의

상하 양원 합동조정위원회는 10월 23일 이틀간의 비공개협상 끝에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연장案에 대해 잠정합의에 도달하여 앞으로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6일과 9월 13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는 同법안의 본회의 표결은 의회휴회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상하원간 이견조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통신장비 수출제한 및 수출통제 절차상의 국방성의 역할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위원회 위원간(특히 Gejdenson 하원 의무위원회 국제무역소위 위원장과 Sarbanes 상원 국제금융 및 통화정책에 관한 금융소위 위원장)에 많은 견해차이를 보였었다. 하원은 소련과 동구 兩지역에 대해 대부분의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Sarbanes 상원의원이 이를 거부하여 난항을 거듭하다 동구권에 대한 대부분의 통신장비 수출통제는 철폐하되 소련에 대한 수출통제 시스템은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양원조정위원회는 9월 30일로 만기가 된 수출관리법(EAA)을 '92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 하원안에서는 이 법안의 1년 연장시행을, 상원에서는 2년 연장을 제안했었고 부시대통령은 9월 30일 현재 양원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International Power Act에 따라 수출통제체제를 무기한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수출관리법(EAA) 10조(g)항에 따른 수출허가 절차에의 국방성참여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성의 허가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토록 규정하는 Gejdenson의원의 하원안을 J. Heinz(共, 펜실베니아) 상원의원과 Sarbanes 상원

의원이 상원을 대표해서 거부함에 따라 결국 하원이 상원에 한걸음 양보하여, 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되어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상 국방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도록 유지하고, 10조(g)항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시행에 관해서는 상무성과 국방성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同위원회는 10월 19일, 수출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美국가안보가 위태로와질 수 있는 비상시에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18개월동안 COCOM 승인없이도 군수품 수출통제리스트 품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EAA상의 財貨범위 조항에 최종 합의하였다.

아울러 10월 18일 同위원회는 수출허가 신청인의 분쟁제소와 관련한 사법적 조치문제를 심의하였고(이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듯했으나 10월 23일경 양원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對이라크 제재, 미사일 기술, 쿠바와의 교역, 생물 및 화학무기와 관련된 EAA조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부의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된 많은 조항이 그대로 법안에 포함된다면 부시대통령이 상하합의안을 비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윌리엄즈 USTR 副代表, SII의 아시아 국가 시장개방 유도 역할 강조

린 윌리엄즈 USTR 부대표는 11월 1일 뉴욕에서 개최된 기업경영자회의에 참석, '아시아 지역에 있어 美-日무역관계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미-일구조조정협상(SII)에 대해 언급, 이 쌍무무역협상이 일본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국가 시장의 개방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즈 부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와 함께 이 SII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가 세계시장을 美

산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산업에 대해 개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이에 따라 산출된 新협정들이 대단히 생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무역분야에서는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는 정도로 개선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이유로 SII는 미국의 일본시장 개방목표의 주요핵심이며, 다른 亞·太국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윌리엄즈부대표는 실제 SII는 그 성격상 GATT가 제시할 수 없는 국내산업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4. 유럽의회-독일에 대해 유럽 의회 의석을 늘리기로 결정

유럽 의회는 통일된 독일에 더 많은 의회 의석을 주기위한 투표결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의 비준이 있을시 독일은 18석을 더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EC조약도 수정될 것이다.

현재 독일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81석을 가지고 있다. 룩셈브루크가 7만명에 대해 6명의 의석을 가진데 비해 독일은 구동독의 공화국 편입으로 100만명당 불과 1명의 유럽 의회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 5. 동유럽 무역협력위원회(EECT) 첫 번째 회의

동유럽 무역협력위원회의 첫 회의가 소련 및 동유럽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코메콘 경제블럭의 와해로 야기된 무역붕괴를 막기 위해 1991. 10. 18일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6. EC 회원국 확대 문제

EC 집행위 위원장 Jacque Delors는 러시아와 다른 소비에트지역을 포함해 EC 회원국을 24~30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찬성했다.

회원국을 늘리기 위한 회담날짜는 현행 12개 회원국이 정치적, 경제적동맹에 관한 기본 골격을 채택할 예정인 오는 12월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 이후에 곧 정해질 것이다. 회원국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도 현 EC 12개 회원국은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해 왔다. 회원국 확충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 7. EC 단일시장-부가가치세 통일

1992년말부터 단일시장 형성의 일부분으로서, EC 국경선에는 어떤 재정적 통제도 없게 될 것이다. 한EC 국가로부터의 상품은 어떤 정식 절차없이 다른 EC 국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1977년 5월의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에 대한 수정안이 최근 이사회 재무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은 11월 회의시까지 기대되지 않고 있다.

의견 불일치는 무관세 판매와 영업허가제 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의 한도에 집중되었는데, EC 집행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제안은 4년동안 폐지를 연기하는 것인데 반해 공화당국의 지원을 받는 영국의 안은 10~15년 동안 폐지를 연기하는 것이다.

#### 8. 한국산 SCTV 반덤핑 최고율 19.6%→10.5%로 인하

한국산 SCTV 수입에 대한 최고 세율이 19.6%에서 10.5%로 낮춰졌다.

이것은 본회의 요청에 의해 EC 집행위가 취한 것으로 19.6%는 비협력 수출업체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되었다.

### 9. 반덤핑 관세-관행-재검사 과정

2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홍콩의 비디오테이프 수출회사인 Bico Magnetics社는 이전에 EC에 비디오테이프를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안될 뿐만 아니라 덤핑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Bico사의 마진을 계산을 위해 부분적인 제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 10. EC, 한국 GSP 부활

EC 집행위는 한국 특혜관세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동의안 체결. EC는 1988년 한국이 EC 지적 소유권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GSP 수혜국에서 철회했다. 동의안에 일부분으로 한국은 EC 상품의 지적 재산권을 개선할 것이며 한국 업체가 EC제품을 모조한다면 한국 업체 Licences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350여개 품목이 6개월내 문서화될 것이다.

이 합의는 과학과 기술의 협력강화를 위한 기회로 나타날 것이며 EEC는 매년 30명의 한국인 제약사를 훈련시킬 것이다.

### 11. 미국 반덤핑 소송

미국 상무부는 일본 Brother Group의 미국 자회사인 Brother Industries의 청원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同회사의 테네시 설비공장은 단지 조립기능만을 수행했기에 미국 생산업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과 수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EC 소재 역외 기업들의 관심을 자아냈고, 이는 곧 미래에 불공정한 수입경쟁을 반대하여 반덤핑법을 사용할 것을 시사했다.

### 12. 벨기에, Siemens 주정부 지원금

EC 집행위는 벨기에 정부의 Siemens 자동 데이터 처리기기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로마협정 Article 93(3)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벨기에 정부에 Comment와 다른 관련 정보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만약 Siemens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벨기에 정부에 Siemens에 부여한 재정 지원금을 회수하게 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 13. EC정치적 동맹에 대한 스페인 비토

올 12월초 마스크리히트협정에서 조인될 예정인 정치적 동맹에 관한 조약의 범위에 대해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독일 사이의 견해차이를 좁히려는 사전협의중 스페인 정부가 향후 신EC조약 채택을 거부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유는 스페인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개정안을 최근 EC외무장관회담에서 기각한 것 때문인데 동 예산개정안은 EC차원의 프로젝트 사업의 기금확충과 EC세입 결정방안 등과 같은 진보적 세제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 14. EC제휴협정 (Association, Agreement), 불가리아 참여

불가리아 대통령 Zhelev는 현재 EC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최종협상 단계에 있는 제휴협정에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 15. 지적소유권 보호편람

유럽의 지적소유권자들이 제3국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았던 경험들을 모아 이에대한 목록표를 만들 계획의 일환으로 EC집행위는 이들 지식권자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에 관한 설문서를 최근 배포했으며 내년 1월 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 관련 공청회를 내년중 개최할 것이다.

### 16. 한국산 CDP Case

EC사법재판소 배심판들은 금성사의 CDP 제조물의 기각을 건의. 금성사는 내수판매가 수출의 5%가 되어야 이를 정상내수로 인정한다는 판례를 들어 EC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었다.

배심원의 의견은 사실적이고도 법적인 배경에서의 검토 끝에 논리적인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데 종종 이러한 류의 의견은 제소결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Case에서는 법정과 양측변호사 모두 현재까지 배심원의 기각 이유서를 밝히기를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정식으로 법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 17. 일본산 Photocopier 재심

EC집행위는 EC산업의 재심요청에 따라 1987년 이후 일본산 복사기에 규제중인 반덤핑 조치의 재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 Case는 EC산업의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1992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 18. 필립스, 지멘스 및 톰슨사와 협상

필립스는 각社.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될 실리콘와이퍼 생산 합작공장설립을 위해 독일의 지멘스사 및 프랑스의 톰슨사와 협의중에 있다.

### 19. 닛산, 프랑스 수입회사 매입

프랑스 정부는 닛산자동차 회사가 닛산의 프랑스 수입회사와 유통업체 매입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프랑스내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정책을 좀더 완화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로써 프랑스기업 인수를 위해 정부허가를 필요로 하는 非EC업체에 대한 제한규정이 심의중에 있다.

### 20. COCOM 규정

파리주재 對공산권 수출규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는 최근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국은 지난 42년간 첨단 서방선진 기술도입을 금지해 온 코콤 규제대상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이들 3국은 동 기술의 對중국 및 소련再 수출을 통제키로 결의했다.

